

학생설계전공 운영지침

시행일: 2022. 05. 06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학생설계전공”이란 학생 스스로 융·복합 학문분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,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.

제3조(신청자격)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생설계전공 신청자격을 부여한다.

1. 2학기 이상 이수하고(편입생은 1학기)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자
(단, 수업연한초과자는 신청 할 수 없음)
2. 신청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 3.3 이상인 자

제4조(신청 및 승인절차) ①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.

② 학생이 설계한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제5조(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) ①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(양 캠퍼스 교무처장)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캠퍼스별 3인 이내의 위원과 양 캠퍼스 학사지원팀장을 간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 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설계전공 신설
2. 학생설계전공생 선발 및 포기
3.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 및 학위명
4. 기타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) ①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부(과) 교수 가운데 1인을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 시 소속 학부(과)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.

② 학생설계전공이 허가된 경우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에게 학생설계전공 기획·개발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3개 이상 학부(과) 전공과목 6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.

② 다전공 신청 가능 학부(과)의 교과목으로 편성하며, 학부(과) 특성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생설계 전공 이수 교과목 편성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이 개설 학부(과)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·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해당서류를 제출하고,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교육과정의 이수) ① 학생설계전공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은 39학점으로 한다.

②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목을 학생설계전공생으로 선발되기 전에 이수한 경우 해당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학생의 본전공과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간에 최대 12학점까지 중복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9조(졸업논문)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졸업논문의 신청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한다. 다만, 조기졸업자는 졸업 당해학기에 신청자격을 부여한다.

③ 졸업논문은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승인 하에 졸업시험 또는 관련 학부(과)에서 개설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. 단, 본전공 또는 다전공의 졸업논문 대체 요건으로 중복 인정 받을 수 없다.

제10조(학위수여) ① 학생이 이수 중인 전공(본전공 또는 다전공 등) 및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학생설계전공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며, 해당 내역은 학위증에 표기한다.

② 학위명은 학생설계전공 신청 시 학칙에 기재된 학위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,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. 승인받은 학위명은 추후 변경이 불가하다.

제11조(학생설계전공 포기) ① 학생이 이수 중인 학생설계전공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포기신청서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.

②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한 학생은 재신청이 불가하다.

③ 학생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제적되면,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학을 하더라도 이수할 수 없다. 단, 학생설계전공 학점 이수를 완료하고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시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다.

④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12조(기타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,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